



제 428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39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7. 8.
3. 회 부 일 : 2025.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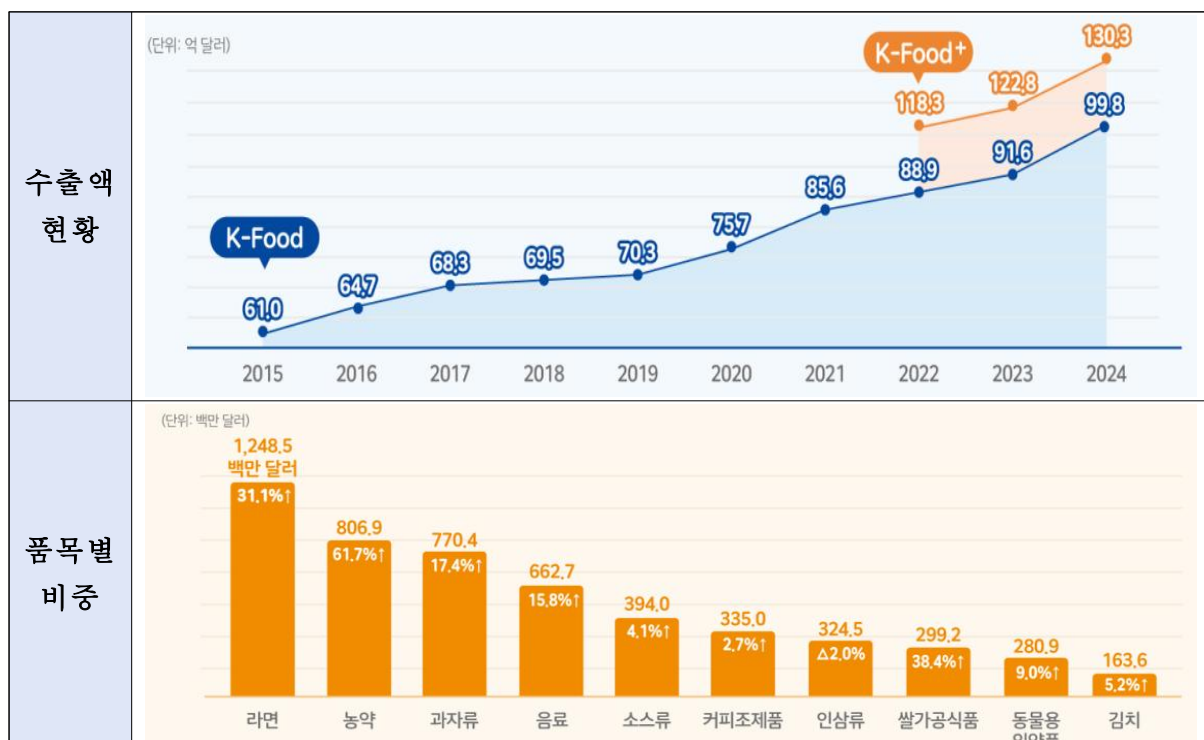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의 전시·체험 활동을 통한 식품산업의 대중화 및 식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¹⁾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식도락관광’(59.8%)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한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줌.

1) 「2023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방한외국인 대상)
 - 방한 고려요인 1위 : 식도락관광(59.8%) > 쇼핑(57.9%) > 자연 풍경 감상(36.4%)
 ※ 식도락관광이 4년 연속 1위

또한, 2024년 농식품 수출액은 99.8억달러로 전년 대비 9.0%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대비 +31.1% 수출이 증가하는 등 한국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

[농식품 수출 현황]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 농식품 + 전후방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이처럼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한식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술소개·홍보·체험 등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적기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정 음식·재료에 대한 박물관만 존재할뿐, 국내 식품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박물관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식품 관련 박물관 현황]

음식	차	공립 : 한국차박물관, 하동야생차박물관 사립 : 다도박물관, 한국차문화박물관
	술	공립 :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사립 : 세계술박물관
	커피	사립: 강릉커피박물관, 제주커피박물관바움, 왈츠와닥터만커피박물관
	김치	공립 : 광주김치박물관 사립 : 뮤지엄김치간
	발효	공립 : 국제한방발효박물관, 제천국제발효박물관
	전통음식	공립 :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사립 : 한국전통음식박물관
	장	공립 : 순창장류박물관 사립 : 세종전통장류박물관
과일	꿀	공립 : 감꿀박물관 사립 : 숨도꿀립성
재료	인삼	공립 : 인삼박물관, 금산인삼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이에 개정안은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한식 세계화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한식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산업기술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품·외식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등 한국 식품산업의 대내외적 성장에 한층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 재정부담 측면에서 볼 때,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1,300억원²⁾이 필요하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이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³⁾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 최근 재정자금이 투입되어 설치·운영되는 국·공립 박물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박물관이 다수 있어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용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전국 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박물관 수는 2017년 853개에서 2024년 916개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⁴⁾하고 있으며, 이중 국·공립 박물관은 2017년 388개에서 2024년 447개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박물관 직원 수 및 소장자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보임.

그러나, 이에 비하여 관람인원은 전체 박물관의 경우 2017년 1억 852만명에서 7,582만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도 2017년 6,578만명에서 2024년 5,495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박물관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람인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2025.7.22.)

-사업비 총 1,300억원 예상: 토지매입비 200억원, 건축비 1,000억원, 조경 및 토목비 100억원 등

3)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국립농업박물관은 2024년에 총 207억원(인건비(125명) 87억원, 기관운영비 50억원, 사업비 67억원)을 지출하였음.

4) 전국 박물관 현황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박물관 수	853	873	881	897	900	909	913	916
전년비 증감	-	+20	+8	+16	+3	+9	+4	+3

[2017년 및 2024년 박물관 운영 현황]

연도	운영주체	박물관 수	전 체			
			직원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수	연관람인원
2017년	국립박물관	47	2,404	353	1,972,859	22,841,926
	공립박물관	341	3,075	407	1,722,988	42,936,158
	사립박물관	361	3,131	641	3,310,589	41,522,414
	대학박물관	104	624	212	1,947,210	1,217,886
	소 계	853	9,234	1,613	8,953,646	108,518,384
2024년	국립박물관	58	3,750	1,345	5,278,890	21,570,520
	공립박물관	389	4,439	1,473	2,881,251	33,379,766
	사립박물관	364	2,693	836	4,550,062	19,977,323
	대학박물관	105	636	328	2,362,960	898,251
	총 계	916	11,518	3,982	15,073,163	75,825,860

※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4. 12)

셋째,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박물관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신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경찰박물관’(2005년 개관),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세박물관’(2002년 개관)과 같이 특별한 법률상 근거 없이도 박물관을 설립·운영 가능하고, 국가기관이 건립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에 따라 법 개정 없이 설치 가능하고, 법률에 설립 근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거를 신설할 경우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넷째,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2002년에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동 박물관은 농업·농촌에 대한 박물관임에도 농업과 식품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하여 식품에 대한 전시·체험을 포함하고 있는데, ‘식문화관’ 전시실 상시 운영, ‘요리교실’ 운영, ‘장(醬) 담그기 문화’ 등 특별전시⁶⁾,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협력전시 등 식품 관련 전시·체험을 실시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국립식품박물관을 별도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기관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을 통해 계적 브랜드 가치 제고 ② 기술발전 및 인력양성으로 발전 기반 강화 등 한국 식품산업의 대내외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③ 기관의 신설·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④ 박물관 설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수는 아닌 점, ⑤ 관련 기관 간 사업수행체계의 조정과정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⁷⁾

문 의 처

02)6788-5417

6) ‘기다림의 맛, 시_간’ 전(展) : 2024.10.18.~2025.2.23.

7)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건립 근거 마련에 동의하나, 조문체계를 감안하여 제17조의 2(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로 조문위치를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